

30.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01 |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개요



정 의

“고소작업차”라 함은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함

02-1 |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점검사례

탑승용 작업대



- | | |
|------------------|--|
| 부적합 사항 | • 고소작업차 탑승장치 확장용 발판 고정상태 부적합 |
| 위험요인 | • 작업대 확장용 고정볼트 이완으로 발판 단락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 내재 |
| 중점안전 관리사항 | • 작업대 확장시 고정볼트 체결/확인 철저 • 작업자 수시교육 실시 |

아웃트리거 (OUT-RIGGER)



- | | |
|------------------|--|
| 부적합 사항 | •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 미 확장 |
| 위험요인 | • 아웃트리거(OUT-RIGGER) 미확장으로 장비 전도사고 위험 내재 |
| 중점안전 관리사항 |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및 하단부에 고임목 설치 • OUT-RIGGER 확장토록 주변정리 및 지반 다짐(조종원 및 협력사 특별교육 실시) |

30.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02-2 |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점검사례

붐 프레임 (BOOM FRAME)



부적합 사항 • BOOM CYLINDER 용접부위 및 몸체부위 CRACK 발생

위험요인 • BOOM 파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 내재

중점안전 관리사항 • 균열부 용접보강 실시 및 최초 반입시 점검 철저

탑승용 작업대



부적합 사항 • 탑승용 작업대 출입문 고정핀 미체결

위험요인 • 작업대 출입문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 내재

중점안전 관리사항 • 사용전 점검 철저 및 조종원 교육 실시

30.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

03 | 장비별 안전작업방법(고소작업대)

운전 중 안전수칙

1.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 걸 것
2.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 초과 금지
3. 하부 조작반은 엔진 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작업대에 있는 상부 조작반에서 실시
4. 작업대 내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작레버는 천천히 작동
5.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
6. 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작업대 바닥에 안정되게 서 있고, 앉거나 가장자리에 기대지 않을 것
7. 2대 이상이 동일 작업을 위하여 접근 시 접촉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 하도록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숙지하는 등 작업관련자간 업무 협조를 철저히 실시
8. 안전장치 부착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9. 작업대 안에서 작업자는 공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10.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위치 이동 금지
11. 작동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대 조작반의 엔진정지(비상정지) 스위치를 조작
12. 작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붐을 축소하여 작업대를 지면에 근접시키고 상부조작반, 하부조작반, 주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차단

주행 시 안전수칙

1. 장거리 주행 시는 붐 설치 잠금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
2.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은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 급정지 금지
3. 주행 시에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주위의 상태를 확인
4.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
5. 지반이 무르거나 기복이 큰 노면 및 급경사 도로 등은 주행 금지
6.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를 것
7. 목적물에 가까이 작업대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붐 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
8. 경사지나 측면경사지역의 주행은 고소차에 명시된 허용경사도 내에서 주행
9. 주행시 시야가 방해 받을 때는 경보등과 경보음을 켤 것
10. 주행할 때는 타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 거리를 유지
11.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운전
12. 제한구역이나 폐쇄 지역 및 건물 옆에서 주행 또는 뒤로 주행할 때는 고속주행장치 사용금지
13. 고속 주행시는 정지하기 전에 주행스피드 스위치를 저속으로 하며 정지 거리를 확인
14. 작업장 인근 송전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압선 일 경우에는 최소안전거리를 유지